

(762)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창진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를 현행에 맞게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